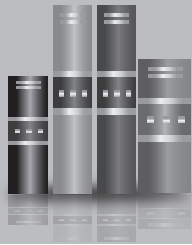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 2012. 1.26]

[대통령령 제23537호,
2012. 1.25, 일부개정]



【제 · 개정문】

◎대통령령 제23537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가축전염병의 종류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
- 2의2. 법 제5조제9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별표 1 제1호다목 1) 나)부터 마)까지를 각각 다)부터 바)까지로 하고, 같은 1)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 협조

별표 1 제1호다목 2) 나)부터 마)까지를 각각 다)부터 바)까지로 하고, 같은 1)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 협조

별표 1 제1호라목 1) 중 “3개[소는 다목 1)의 마)를 포함한 4개]”를 “4개[소는 다목 1)의 바)를 포함한 5개]”로 하고, 같은 목 2) 중 “3개[소는 다목 2)의 마)를 포함한 4개]”를 “4개[소는 다목 2)의 바)를 포함한 5개]”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1) 중 “2개[소는 다목 1)의 마)를 포함한 3개]”를 “3개[소는 다목 1)의 바)를 포함한 4개]”로 하고, 같은 목 2) 중 “2개[소는 다목 2)의 마)를 포함한 3개]”를 “3개[소는 다목 2)의 바)를 포함한 4개]”로 한다.

별표 1 제1호바목 1) 중 “1개[소는 다목 1)의 마)를 포함한 2개 이하]”를 “2개[소는 다목 1)의 바)를 포함한 3개 이하]”로 하고, 같은 목 2) 중 “1개[소는 다목 2)의 마)를 포함한 2개 이하]”를 “2개[소는 다목 2)의 바)를 포함한 3개 이하]”로 한다.

별표 1 제1호자목 중 “경우”를 “경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만 해당한다)”로 한다.

별표 1 제1호카목 1) 및 2)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별표 1 제1호타목 중 “사용제한된 도축장”을 “사

용제한된 도축장(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도축장과 법 제48조제1항제5호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위반한 도축장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카목부터 서목까지를 하목부터 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법 제17조의2제1항 권단을 위반하여 출입 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출입기록을 한 자	법 제60조제2항 제4호의2	100	200	300
타. 법 제1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존기한까지 출입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자	법 제60조제2항 제4호의3	100	200	300
파.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법 제60조제2항 제4호의4	100	200	30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0930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위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 권한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도축장·축산물가공장 등에 있는 가축의 생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소각하거나 매몰한 물건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7.1>

제2조(가축의 범위)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2008.2.29, 2010.12.29>

1. 고양이
2. 타조
3. 그 밖의 사육하는 동물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제2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7.22>

1. 가축전염병명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명(농장명이 없는 경우에는 농장주명) 및 농장 소재지

- 3. 가축전염병 발생 일시
- 4.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종류 및 규모
-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농장은 소, 산양, 면양,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및 메추리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한다.
〈개정 2011.7.22〉

③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으로 한다.
〈개정 2011.7.22〉

- 1. 구제역(口蹄疫)
- 2. 돼지열병
- 3. 돼지오제스키병
- 4.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 5. 브루셀라병
- 6. 결핵병
- 7.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 8. 추백리(雛白痢)
- 9. 가금(家禽)티푸스
- 10. 뉴깃슬병
- 11. 사슴만성소모성질병
- 12.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④ 삭제 〈2011.7.22〉

⑤ 제1항에 따른 정보는 농림수산식품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시·도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그 외에 축산 관련 신문이나 잡지에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6.7〉

[본조신설 2010.12.29]

제2조의3(검역 및 방역 시설 설치·운영)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등의 지역에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하는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휴대품 및 수하물 검사대. 다만, 다른 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로 갈음할 수 있다.
- 2. 옷, 신발, 휴대품 및 수하물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이동식 소독 장비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1.7.22]

제2조의4(가축방역·검역 수행 기관) 법 제5조제4항에서 “가축방역·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7.22]

제2조의5(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 시 제출할 서류)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2]

제3조(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및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4.1.9, 2007.6.4, 2008.1.31, 2008.10.8, 2010.12.29, 2011.6.7>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이하 “가축방역관”이라 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으로서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중에서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4.1.9, 2005.6.30, 2007.6.4, 2008.1.31, 2008.2.29, 2008.10.8, 2010.7.21, 2011.6.7>

③가축방역관은 소속기관장의 명을 받아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연구·계획·지도·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가축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조의2(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이하 “기동방역기구”라 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축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총괄하며, 상황총괄반, 이동통제반, 소독실시반, 매몰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② 기동방역기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주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신속한 상황실 설치, 이동통제, 소독 및 매몰조치 등을 위한 현장 지도·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③ 기동방역기구의 구성·임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7.22]

제4조(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하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31>

1. 수의과학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방향
 2. 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진단기술 및 예방약의 개발
 3. 가축관련 공중위생향상과 관련된 기술개발
 4. 수의과학기술과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5. 수의과학기술개발성과의 활용계획
 6. 수의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소요재원의 조달 및 집행
 7. 그 밖에 수의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는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대학·연구기관 및 농업단체 등과 수의과학기술의 공동연구, 연구성과의 활용 그 밖에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조(병성감정기관 등) ① 삭제 <2011.7.22>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질병관리본부장을 말한다. <신설 2010.12.29>

[제목개정 2010.12.29]

제6조(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① 법 제19조제2항(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

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31>

1. 우역·우폐역·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뉴캐슬병·소해면상뇌증 또는 사슴만성소모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가축에 대한 격리·역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에 의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는 기간은 6월로 한다. <개정 2008.1.31>

③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문서(소유자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주어야 하고, 해당 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소유자등과 폐쇄명령 일자를 관할 시·도지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1.31, 2011.6.7>

제7조(가축의 사육제한명령) ① 법 제19조제2항(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31>

1. 제6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외의 제1종가축전염병, 제2종가축전염병 및 제3종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에 대한 격리·역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종가축전염병, 제2종가축전염병 및 제3종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인접한 지역에서 사육된 가축의 소유자등이 당해 가축에 대한 격리·역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3.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지연한 경우

4. 그 밖에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은 사육제한기간과 그 기간중에 감축할 가축(이하 “감축대상가축”이라 한다)의 수를 정하여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축대상가축의 수는 격리·역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받은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사육되고 있는 전체 가축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감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1. 사육제한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감축대상가축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까지 감축

2. 사육제한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사육제한기간의 만료일까지 감축대상가축중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감축된 가축외의 가축의 감축

③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1.31>

④제1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하

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제8조(사체의 재활용 등)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사체를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료제조 시설이나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열처리 시설 또는 발효처리 시설에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 또는 발효처리하여 동물(소·양 등 반추류 가축은 제외한다)의 사료, 비료의 원료 또는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만 해당된다. 다만,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2>

1. 브루셀라병
2. 돼지오제스키병
3. 결핵병
4. 그 밖에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전문개정 2008.1.31]

제9조(동물검역관을 두는 기관)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란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를 말한다. <개정 2008.1.31, 2010.12.29, 2011.6.7>

제10조(검역관리인의 자격·임무)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의 자격은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의학·약학·간호학·축산학·화학 또는 물리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가축방역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개정 2008.1.31>

② 검역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검역물의 입고·출고·이동 및 소독에 관한 사항
2. 지정검역물의 현물검사, 검역시행장의 시설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의 채취 및 송부에 관한 사항
4. 검역시행장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보상금 등) ① 법 제4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1.31>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가축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④ 법 제4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80 이상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신설 2011.7.22>

제12조(생계안정비용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생계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우역·우폐역·구제역·돼지열병·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8.1.31, 2009.9.3>

1. 가축의 소유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가축을 발견하고도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3.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4. 해당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법 제19조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② 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가계비의 6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고, 살처분 가축의 종류별·두수별 지원액 그 밖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6.30, 2007.10.23, 2008.1.31, 2008.2.29>

③ 생계안정비용은 해당 비용의 10분의 7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개정 2009.9.3>

제12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① 법 제49조의 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자원봉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자원봉사자 및 가축을 살처분하거나 소각·매몰한 사람으로서 법 제49

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축의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에 참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치료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진료기관에 치료요청을 하고, 치료 신청자에게 해당 진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치료요청을 받은 진료기관은 치료 신청자에게 전문가를 배정하여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담한 전문가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치료 신청자에게 해당 진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치료는 전문가 상담치료와 상담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물치료 등 추가적인 치료로 하되, 치료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문가 상담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 국가가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2. 추가적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치료 대상자가 부담

⑥ 제5항에 따른 상담치료와 추가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제4항에 따라 상담치료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본조신설 2011.7.22]

제13조(비용의 지원)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31, 2011.7.22>

1. 법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록 또는 투약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에 소요되는 비용 및 법 제25조에 따른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 : 해당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2. 법 제20조, 법 제22조제2항·제3항 및 법 제23조제1항·제3항에 따른 살처분의 실시나 가축의 사체 또는 오염물의 소각·매몰 및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는 비용은 구제역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신설 2011.7.22>

제14조(수수료) ① 축산관련단체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동가축방역의 실시에 대하여 소유자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7.22>

1. 검사·주사·약물목록 또는 투약 등에 소요되는 주사기 및약품 등의 재료구입비
2. 검사·주사·약물목록 또는 투약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활한 공동가축방역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최고 한도액을 정하는 등 수수료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2008.2.29>

제14조의2(정보 요청의 방법 및 범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요청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출국할 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등의 여권발급 정보, 출국 및 입국 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2.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

[본조신설 2011.7.22]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1.6.7, 2011.7.22, 2012.1.25>

1. 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가축전염병의 종류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무역항, 공항 및 출입장

| 축산법령 |

소 등에서의 검역 및 방역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의2. 법 제5조제9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
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 개발계
획의 수립 및 시행

4.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

5.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험연구용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건
의 수입허가

②시·도지사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법 제
29조에 따른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권한
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31>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
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3항의 검사업무중
구제역·돼지열병·돼지오제스키병 및 뉴캐슬병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
병의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를 법 제9조에 따른 가
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협
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방역본
부 또는 축산관련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2008.2.29>

제1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수산식품
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
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
함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및 시·도가축

방역기관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가축 방역 및 검
역 사무나 법 제36조에 따른 수입 검역 사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에 따른 과
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7.1]

제17조 삭제 <2008.1.31>

부칙 <대통령령 제18070호, 2003.7.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사
유가 발생하는 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
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12호, 2004.1.9> (농촌진
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1항중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
로 하고, 동조제2항중 “축산기술연구소장”을 “축
산연구소장”으로 한다.

③ 및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 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증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99호, 2005.6.30>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이 영 시행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700호, 2006.10.12>

-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보상금에 대한 경과조치) 2006년 5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부루세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최초로 부루세라병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부루세라병이 발생하거나 이 영 시행일 전까지 부루세라병 검사를 최초로 신청한 자에 대한 보상금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079호, 2007.6.4>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를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장”을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10.23> (통계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 중 “「통계법」 제3조제4호”를 “「통계법」 제3조제3호”로 한다.
- ③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12.31>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77호, 2008.1.31>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2.29>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축산법령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2항·제4항, 제4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및 제16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I 다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5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91호, 2008.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브루셀라병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살처분한 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78호, 2008.10.8>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축산과학원”을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축산과학원장”을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13호, 2009.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살처분 명령을 하는 가축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90호, 2010.7.21>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을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로, “공익수의사”를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97호, 2010.11.19>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자목 및 별표 2 II. 제4호나목·제8호나목·제9호나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61호, 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한 경우나 가축방역관에게 가축을 살처분하게 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62호, 2011.6.7>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항, 제3조제1항 및 제9조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②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038호, 2011.7.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및 비용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 제12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상금 및 비용의 지원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상금 및 비용의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537호, 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상금의 지급분 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12.1.25>

보상금의 지급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보상금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주사·약물목록 또는 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죽은 가축과 사산 또는 유산된 가축의 태아의 경우 : 검사 등의 실시 당시의 해당 가축 및 가축의 태아의 평가액의 100분의 80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주사·약물목록 또는 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부상당한 가축 : 부상당한 가축의 진료비 또는 부상당한 가축과 정상적인 가축의 출하가격의 차액(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도축장에 출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살처분 당시의 살처분한 가축평가액(이하 “가축평가액”이라 한다)의 전액. 다만, 병성감정 결과 브루셀라병(소에만 해당한다)·돼지열병·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감염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일을 기준으로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결핵병(사슴에만 해당한다) 감염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일을 기준으로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또는 나타나기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조치를 모두 이

행한 경우

가) 해당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록·투약 또는 주사·투약의 금지

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 협조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

라) 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따른 가축의 격리·역류 또는 이동제한과 가축의 소유자 등, 그 동거 가족 및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에 대한 이동제한 또는 소독

마)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소만 해당한다)

2)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

가) 해당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록·투약 또는 주사·투약의 금지

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 협조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

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격리·역류 및 이동제한과 가축의 소유자 등, 그 동거 가족 및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에 대한 이동제한 또는 소독

마)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소만 해당한다)

라.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목 보상금 상당액에서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 금액

- 1)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의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거나, 다목 1)의 조치 중 4개[소는 다목 1)의 바)를 포함한 5개]의 조치를 이행한 경우
- 2)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과 관련하여 다목 2)의 조치 중 4개[소는 다목 2)의 바)를 포함한 5개]의 조치를 이행한 경우

마.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목 보상금 상당액에서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 금액

- 1)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5일 지난 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거나, 다목 1)의 조치 중 3개[소는 다목 1)의 바)를 포함한 4개]의 조치를 이행한 경우
- 2)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과 관련하여 다목 2)의 조치 중 3개[소는 다목 2)의 바)를 포함한 4개]의 조치를 이행한 경우

바.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목 보상금 상당액에서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

액을 감액한 금액

- 1)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가축방역관이 해당 가축의 가축전염병 발생사실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였거나, 다목 1)의 조치 중 2개[소는 다목 1)의 바)를 포함한 3개 이하]의 조치만을 이행하거나 모두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과 관련하여 다목 2)의 조치 중 2개[소는 다목 2)의 바)를 포함한 3개 이하]의 조치만을 이행하거나 모두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 법 제21조(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의 권고를 받은 가축의 소유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도태의 권고대상 가축이 해당 가축전염병에 걸리게 되어 살처분한 경우

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와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이 공개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이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라 한다)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고 신체·의류·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 항구나 공항에서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그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사육시설 안에 있는 물건 중 법 제23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의 경우 : 병성감정 결과 감염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소각 또는 매몰한 당시의 해당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40, 병성감정 결과 감염축이 발견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소각 또는 매몰한 당시의 해당 물건평가액의 전액

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집유장·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축산물보관장 및 축산물판매업소와 「축산법」에 따른 계란집하장 및 부화장 등에 있는 가축의 생산물 중 법 제23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의 경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만 해당한다) : 소각 또는 매몰한 당시의 해당 물건평가액의 전액

차.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축이 격리·억류되는 기간동안 생산된 가축의 생산물을 법 제23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 경우 : 소각 또는 매몰한 당시의 해당 생산물의 평가액의 전액

카.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자 다만,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1) 수의사인 경우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나목 전문계약직공무원의 다급 상한액을 기준으로 이동제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

2) 그 밖의 축산 관계 종사자인 경우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나목 전문계약직공무원의 마급 상한액을 기준으로 이동제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

타.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된 도축장(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도축장과 법 제48조제1항제5호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위반한 도축장은 제외한다) : 도축장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일수 × (최근 1년간 1일 평균도축두수 -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기간 중 1일 평균도축두수) × 해당 도축장의 최근 1년 평균 두당 도축수수료 × 70%(도축장운영경비 중 고정비용 비율)

2. 보상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사체를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제1호에 따른 보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12.1.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종류·사육규모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가목 또는 같은 호 아목 1)의 과태료에 대한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자	법 제60조 제1항제1호	100	200	500
나.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법 제60조 제1항제2호	100	200	500
다.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60조 제1항제3호	100	200	500
라. 법 제7조제4항(법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및 예찰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마.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의 신고를 하지 않은 동물약품이나 사료를 판매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60조 제1항제4호	50	200	500
사.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60조 제1항제4호	50	200	500
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자 1)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2)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3)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4)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 또는 계란집하장의 운영자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법 제60조 제1항제5호	50 100 100 50 50	200 300 300 200 200	500 500 500 500 500
자.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않은 자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2)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3)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4)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 또는 계란집하장의 운영자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6)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법 제60조 제2항제3호	50 100 100 50 50 50	150 150 150 100 100 150	300 200 200 200 200 300
차. 법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2)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3)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4)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 및 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 또는 계란집하장의 운영자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6)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법 제60조 제2항제4호	50 100 100 50 50 50	150 150 150 100 100 100	300 200 200 300 100 200

| 축산법령 |

카.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입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출입기록을 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2	100	200	300
타. 법 제1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존기한까지 출입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자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3	100	200	300
파.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4	100	200	300
하.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5호	100	200	300
거. 법 제26조를 위반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5호	50	100	150
너. 법 제3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역관의 출입·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6호	100	200	300
데. 법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자 1)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인 경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가목 외의 동물인 경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3)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4)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법 제60조 제1항제6호	300 70 10 5	400 100 50 10	500 200 100 50
러.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역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60조제2항제7호	100	200	300
머.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물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자	법 제60조제2항제8호	100	200	300
버.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않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9호	100	200	300
서.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60조 제1항제4호	100	200	300
어.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음식물 처리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10호	50	100	200
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11호	30	50	100
처.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12호	50	100	200